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460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용석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과 송아량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을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19.2.2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용석 의원 외 9명과 송아량 의원 외 10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가,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및 관리·감독·사후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 2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운수 종사자의 교육’을 추가함(안 제10조)
- 나.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다. 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다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법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2.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3.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로 한다.

부칙<제6045호, 2015.10.8>제2조 중 “제1항나목”을 “제2호”로  
한다.

부칙<제6045호, 2017.5.18.>제1조 중 “제1항다목”을 “제3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u>다목</u>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u>다목</u> ----- -----. -----.</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p> <p>1. ~ 4. (생략)</p> <p>5. <u>법 제5조</u>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6. (생략)</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6.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u>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 법 제21조 ----- ----- 법 제23조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 다음 각 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운수종사자의 교육</p>

〈신 설〉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신 설〉 제10조의2(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신 설〉 제10조의3(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li> <li>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li> <li>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li> </ol>
제17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17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부칙 &lt; 제6045호, 2015.10.8&gt;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  <u>제1항나목</u>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            다.</p>	<p>부칙 &lt; 제6045호, 2015.10.8&gt;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  <u>제2호</u>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p>
<p>부칙 &lt; 제6493호, 2017.5.18.&gt;            제1조(유효기간) 제10조<u>제1항나목</u>의 규정은 201            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부칙 &lt; 제6493호, 2017.5.18.&gt;            제1조(유효기간) 제10조<u>제3호</u>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